

하남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연월일 : 2024. 2. .

발 의 자 : 강성삼 의원

1. 제안이유

- 가.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라 건강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맨발걷기가 도시공원에만 한정되지 않고 하남시의 공원, 산책로, 탐방로, 숲 체험코스 등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정의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함.
- 나. 맨발걷기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변경
- 「하남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「하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
- 나. 맨발 산책로 정의의 구체화 (안 제2조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맨발 걷기에 따른 심신 치유 및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이 생기며 맨발 보행로에 대한 수요도 높아짐에 따라 맨발 걷기를 도시공원에만 한정하지 않고 통행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로 정의하여 좀 더 건강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것으로,
- 검토 결과,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됨.